



중구보건소



수신 서울특별시시장(식품안전과장)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를 이용하여 일부 음식점에서 이중가격표를 사용하여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바, 가격표시에 대한 규정 위반시 1차 행정처분인 시정명령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되지않아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가격표시 위반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법령개정 건의

가. 현황

-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항에 의한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보면 영업자는 게시된 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를 적용하여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